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37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곽원곤

피 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영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F, G 사이에 2015. 7. 14. 체결된 399,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312,142,000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143,018,61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4,720,603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13,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F, G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4,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7. 28. 체결된 22,502,4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146,175,310원의 증여계약, 2017. 11. 3. 체결된 45,694,273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97,324,337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2,106원, 원고 B, C, D에게 각 70,154,7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9. 6.경 I이 운영하는 J 필리핀 국영기업 K 주식회사 사이에 슬롯머신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고 K 주식회사로부터 I이 납품한 슬롯머신기기의 납품대금의 90%인 미화 1,596,667달러를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H 주식회사가 중개수수료로 받아야 할 미화 334,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1,262,667달러를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975), G은 '2013. 9. 15.경 F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미화 690,000달러를 G 명의의 필리핀 은행 계좌에, 미화 500,000달러를 필리핀에 있는 G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I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11. 26. 및 2013. 11. 28. 위 690,000달러를 전액 인출하여 위 500,000달러와 함께 합계 미화 1,190,000달러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물보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900).

나. I은 F, G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5026호로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27. '에게, F은 1,451,435,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G은 F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67,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F, G의 자녀로,

- 1) 2015. 6. 1. 서울 서대문구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9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14.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2) 2016. 7. 15. 충남 예산군 N건물 O호, P호(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156,071,6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3.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3) 2016. 6. 6. 서울 광진구 Q 외 6필지 지상 R건물 S호(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50,9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21.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은 2016. 4. 1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배우자인 원고 A이 3/9,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각 2/9의 지분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F, G은 망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F, G의 피고에 대한 돈의 증여는 망인 또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취소된 증여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에 각 그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F, G 사이에 2015. 7. 14.

체결된 399,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312,142,000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143,018,610원의 증여계약은 각각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84,720,603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13,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에 각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6. 7. 21.

4,000,000원, 7. 28. 22,502,400원, 9. 13. 146,175,310원이,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7. 11. 3. 45,694,273원, 11. 21. 97,324,337원이 각각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와

F, G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4,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7. 28. 체결된 22,502,4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3. 체결된 146,175,310원의 증여계약, 2017. 11. 3. 체결된

45,694,273원의 증여계약, 2017. 11. 21. 체결된 97,324,337원의 증여계약은 각각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2,106원, 원고 B, C, D에게 각 70,154,7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취득을 장물취득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2018. 12. 31.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

G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언급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무렵 취소의 원인인 ‘피고가 F, G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13.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F, G은 2013. 8.경 필리핀 내에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그 무렵 이미 피고에게 그 처분대금을 모두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증여받은 돈과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일이나 대금 지급일에 그 가액 상당액이나 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금전 증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만을 수반할 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F, G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 또는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에 비로소 F, G과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 또는 각 지급 대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F, G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주장과 같은 날짜에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 또한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김병휘, 판사 조현우